

000293

禮紀四二九〇年一月

農業協同組合法(案)

農
林
委
員
會

공백

目次

第一章	總則	一
第二章	里河農業協同組合	六
第一節	目的及區域	六
第二節	業務	七
第三節	設立	八
第四節	組合員	一四
第五節	機關	二二
第六節	經理	三三
第七節	監督	三六
第八節	分割、合併、解散	三八

第九節 清算

第十節 登記

第三章 市郡農業協同組合

第四章 園藝協同組合、畜産協同組合

第五章 特殊農業協同組合

第六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第七章 罰則

附則

參考 1. 農業協同組合法案主要骨子

2. 農業協同組合法例準用民法及非訟事件節次

法條文

四二

四四

四六

五二

五六

五九

七一

七三

七七

八一

農業協同組合法案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目的) 本法는 農民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促進하
여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民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을
圖謀함으로 卽國民經濟의 均衡以及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
로 한다

第二條 (名稱) ① 本法에서 農業協同組合 (以下 組合이라
稱한다) 이라 함은 里洞 農業協同組合, 市郡 農業協同組
合, 園藝協同組合, 畜産協同組合 卽 特殊 農業協同組合
을 稱한다

(畧稱) ②本法에서 里洞組合이라 함은 里 또는 洞 農業協同組合을 市郡組合이라 함은 市 또는 郡 農業協同組合, 園藝協同組合, 畜産協同組合을, 特殊組合이라 함은 特殊 農業協同組合을, 中央會라 함은 農業協同組合 中央會를 稱한다

(法人格) ③本法에 依하여 設立하는 組合,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三條 (最大援助 非營利 不偏 不黨의 原則) 組合 中央會는 工業務에 있어서 組合員, 會員 (以下 構成員이라 稱한다) 을 爲하여 差別없이 最大의 援助를 함을 目的으로 하고 營利的 投機的 業務 또는 一部 構成員의 利益에 偏重되는 業務를 行하지 못하여 政治에 關與하지 一切의 行爲

를 할 수 없다

第四條 (公務員不參與의原則) 公務員(選舉公務員을 포함한다)은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 또는 職員이 될 수 없다. 但里洞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은 例外로 한다.

第五條 (中央, 地方名表示) ① 中央會는 그名稱中에 農業協同組合을 冠하고 組合에 있어서는 各地方名을 冠한 業種別協同組合名을 使用하여야 한다.

(類似名稱使用禁止) ②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아니라도 그名稱中에 第二條에 規定한 農業協同組合, 園藝協同組合, 畜産協同組合, 特殊協同組合, 農業協同組合, 中央會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六條 (免稅) 組合, 中央會의 所得稅, 法人稅, 營業

稅 印紙稅 登錄稅와 그附加稅를賦課하지 못한다

第七條 (事務所) 組合 中央會의 住所는 그主된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八條 (商法準用) 組合 中央會에는本法의 定하는 바를 除한外에商法中商行爲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第九條 (主務部長官) ① 組合 中央會는農林部長官(以下主務部長官이라稱한다)이監督한다 但信用業務에對하여는主務部長官이財務部長官과合意하여이를監督한다

(監督規定) ② 本法에 依據하여組合의監督上必要한事項은大統領令으로定한다

第十條 (定義) ① 本法에서農民이라함은 스스로農業을

經營하거나 또는 農業에 從事하는 家口 主個人을 말한다

② 本支에서 農業이라 함은 特殊農業을 包含한 廣義의 農事 經營業을 말한다

③ 前二項의 農民과 農業의 範圍에 關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十一條 (政府의 協力, 施設 供與) ① 組合, 中央會의 業務에 對하여는 各部長官은 積極的으로 協力하여야 하며 政府의 施設은 組合과 中央會의 利用에 供하기 爲하여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政府에 意見 提出權) ② 中央會長은 組合의 發展에 關하여 政府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第二章 里洞農業協同組合

第一節 目的과 區域

第十二條 (目的) 組合은 組合員의 農業生産力 增進과 經濟的、社會的地位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十三條 (區域) ① 組合의 業務 區域은 里洞의 區域으로 한다 但 業務의 形便이 里洞의 區域으로 組織함이 不適當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다른 區域을 定할 수 있다

(一) 區域一組合原則) ② 同一 業務 區域內에 二以上의 組合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二節 業務

第十四條 (業務種類) 組合은 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다

各의業務의全部또는一部를行한다

一 生産事業 (農家計劃 및 里洞綜合計劃의樹立과實踐指導)

二 購買事業 (生産物資 및 生活必需品의共同購買)

三 販賣事業 (生産物의蒐集、運搬、檢査共同販賣)

四 利用事業 (加工施設、共同作業場施設、保管施設

文化施設、醫療施設、農業用機器具等の共同利用)

五 共濟事業 (慶吊 및 災害에對한共濟業務)

六 信用事業 (預金の取纏과農業資本의貸付業務)

七 政府補助事業

八 其他目的達成에 必要한 業務

第十五條 (非組合員의 利用) 組合은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限定款에 定하는 外에 依하여 組合員이 아닌 者에 게 그 施設을 利用케 할 수 있다 但 一 事業年度에 있어서 組合員外의 利用事業의 分量은 全事業分量의 五分之一을 超 過하지 못한다

第三節 設 立

第十六條 (設立登錄) ① 組合을 設立하고 行할 때에는 第二十三條 第一項에 規定한 二十人以上의 農民이 發起人이 되여 設立準備會를 組織하고 定款을 作成하여 創立總會의 議

決을 얻어 主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 但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作成하되
그 以外의 事項을 規定코 치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할 때 또한 같다

(設立要件) ㉔ 組合은 第二十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함
으로 成 立한다

第十七條 (定款記載事項)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
고 發起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一 目的

二 名稱

三 區域

四、事務所의所在地

五、組合員의資格과組合員의加入 및脫退와無限責任에

關於規定

六、組合員의出資額 및그拂込方法과持分計算에關於規

定

七、經費賦課 및過怠金徵收에關於規定

八、積立金의金額 및積立方法에關於規定

九、剩餘金의處分 및損失額의處理方法에關於規定

十、事業年度 및會計年度期間과組合經理에關於規定

但事業年度와會計年度는同一期間으로 하여야한다

二、組合業務의種目과그執行에關於規定

三、總會其他決議機關 및組合長、常務理事、理事、監

事의定數와在免에關한規定

三、公告方法에關한規定

四、附則으로揭記할事項

(一) 存立時期또는解散의事由를定할 때에는그時期또는事由

(二) 組合成立後現物出資를約定한時는그出資財産의名稱、數量、價格및出資者의姓名、住所와此에對한變換出資座數、賣戻特約條件

(三) 組合成立後讓渡를約定한財産이있는境遇에는그財産의名稱、數量、價格및讓渡人의住所姓名

(四) 組合設立當時에組合長、理事및監事의住所姓名第十八條(出資一座의定額)의 出資一座의金額은均一

하게 이를定하여야 한다

(出資의 最高限度) ② 出資一座의 金額의 最高限度와 組合員一人이 가진 出資座數의 最高限度는 定款으로 定한다

第十九條 (第一回 出資 拂込) 組合設立의 登錄을 完了하였을 때에 는 發起人은 滯留缺이 그 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継하
고 組合員에게 第一回 出資金을 拂込시켜야 한다

第二十條 (設立 登記) ① 前條의 拂込을 시킨 後에는 主事務
所에서 拂込期日 後二週日以內에 支事務所에는 三週日以
內에 各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一 第十七條 第一項 第一號乃至 第四號 및 第十四號에 掲

記 事 事 項

三 出資總座數 및 拂込한 出資의 總額과 無限責任의 表示

三 設立登錄年月日

四 組合長、常務理事、理事及監事의住所姓名

(變更登記) ①前項에揭記한事項中變更이生하였을때에
는二週日以內에各事務所所在地에서그登記를하여야
한다 但第一項第二號의變更事項에對하여는每事業年
度末日現在에該會計年度終了後一箇月內에登記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 (民法準用) 民法第四十五條、第四十七條 및

第四十八條의規定은組合에이를準用한다 但民法第四

十八條中「第四十六條第一項」이라한것은本法第二十
條로본다

第二十二條 (行政區域의地名變更登記) ①行政區域의地

名에變更이 있을 때에는登記簿에記載된그名稱은當然히 이를變更登記한것으로看做한다

(登記通知) ② 前項의變更이 있을 때에는組合은滯留
이이를登記所에通知하여야한다

(登記所의接受) ③ 前項의通知가 있을 때에는登記所는登
記簿에記載를變更하여야한다

(定款의當然變更) ④ 第一項의規定은組合의區域및事務
所所在地에關한定款의規定에이를準用한다

第四節 組合員

第二十三條 (組合員의資格) ① 組合은組合業務區域内に
住所나居所또는事業場을 가진農民을組合員으로하여構

成한다

(特殊農業者의 加入 特例) ② 畜産 園藝 其他特殊農業
의 經營者로서 畜産組合 園藝組合 또는 特殊組合이 設立
되지 않았거나 또는 地理上 關係로 前記 協同組合에 加入키
困難한 者가 當分 間里村組合의 施設을 利用함이 適當하다
고 認定되는 者는 이를 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組合員의 出資義務) 組合員은 出資一座以
上을 가지야 한다

第二十五條 (無限責任) 組合員의 責任은 無限責任으로
한다

第二十六條 (出資金 및 賦課金의 相殺 不認定) 組合員은
里村組合에 拂込할 出資 및 賦課金에 對하여 相殺 또는 組合

에對抗하지 못한다

第二十七條

(經費및還息金) 組合은定款의定하는바에
依하여組合員에經費및還息金을賦課할수있다

第二十八條

(持分) ① 組合員은總會의承認이없이는
그持分을讓渡하지 못한다

(非組合員의持分不認定) ② 非組合員으로서持分을讓

受코지할時는加入의例에依한다

(出資의所有權移轉 質權設定不認定) ③ 組合員의出

資는所有權移轉 또는質權의目的이되지 못한다

第二十九條 (持分共有禁止) 組合員은持分을共有할수

없다

第三十條

(持分讓受와權利義務繼承) 持分의讓受人은

그持分에對하여讓渡人의權利義務를繼承한다

第三十一條 (平等議決의原則) 組合員은出資額의多少에關係없이平等한議決權과任員의選舉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第三十二條 (組合員數의制限禁止) ① 組合은組合員의數를限定하지 못한다

(二) 個組合의負債不認定 ② 同一人이同種의他組合에加入하고있는 때에는貸付金其他組合負債를가지는行爲는一個組合에限한다

第三十三條 (加入의總會同意) 組合員의加入은總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但組合은正當한事由가없는限組合員의資格을 가진者에對하여加入을拒絶 또는그加入에關

하여 他 組合員에 對한 것보다 不利한 條件을 附하지 못한다
 第三十四條 (脫退의 總會 同意) 組合員은 事業年度의 終
 末에 限하여 總會의 同意를 得어 脫退할 수 있다 但三個月
 前에 組合에 豫告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 (自然脫退) ① 組合員은 다음의 一에 該當
 하는 事由에 依하여 自然脫退된다

- 一 組合員으로서의 資格喪失
- 二 死 亡
- 三 破 産
- 四 除 名

② 前項 第一號에 依한 資格喪失은 理事會의 決定에 依한다
 第三十六條 (相續加入) ① 死亡으로 因하여 脫退한 組

000391

合員의 相續人은 加入의 例에 依하여 被相續人의 出資額을 繼承할 수 있다

② 第三十三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出資額을 繼承한 相續人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三十七條(除名) ① 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로써 이를 除名할 수 있다

一 出資의 拂込、經費의 支拂、其他 組合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않거나 組合員

二 其他 定款에 禁止하는 行爲를 하는 組合員

② 前項의 境遇에 組合은 總會開會日 十日前에 그 組合員에 對하여 除名事由를 通知하고 總會에서 辨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前二項에對한除名은除名한組合員에對하여그趣旨를
通知하지아나하면그組合員에對抗할수없다

第三十八條(持分の還拂) ① 脫退한組合員은定款의規
定에依하여그持分の還拂을脫退年度經過後請求할수있
다

② 前項의請求權은脫退年度로부터二年間이를行하지아
나함으로소消滅된다

③ 脫退한組合員이組合에對한債務를完濟할때까지는組
合은第一項의規定에依한還拂을停止할수있다

第三十九條(損失額의負擔) 持分을計算함에있어서組
合의財産으로그債務를完濟할수없을때에는組合은定款
의定하는바에依하여脫退한組合員에對하여그負擔에歸

屬할損失額의拂込을請求할수있다

第四十條 (決議取消請求) 組合員은總會의召集節次에
는그決議方法이法令 또는定款에違反됨이認定된 때에는
決議日부터一箇月內에그決議取消을主務部長官에請求
할수있다

第四十一條 (組合員名簿) 組合에는다음事項을記載

한組合員名簿를備置하여야한다

- 一 姓名、住所 또는居所
- 二 加入 및脫退의事由와그年月日
- 三 出資座數와出資各座의取得年月日
- 四 出資各座에對하여拂込한金額 및그拂込年月日
- 五 配備金計算 및그支拂記錄

六、持分計算及脫退等之一部讓渡에 依한 工還拂記錄
損失額의 拂込記錄

第五節 機 関

第四十二條 (定期總會) ①定期總會는 每年一回定款이
規定한 時期에 組合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 ②臨時總會는 必要가 있을 때에 組合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四十三條 (總會의 召集請求) ①組合員은 總組合員의
五分之一以上의 同意를 얻어 總會의 目的 및 그 召集의 理由
를 記載한 書面을 提出하여 總會의 召集을 組合長에게 請求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組合長은 二週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第一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二週日內에 正當한 理由에 이 組合長이 召集의 節次를 아니할 때에는 監事가 五日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前項의 境遇에는 監事가 議長의 職務를 行한다

第四十四條 (總會의 定足數) 總會는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한다

第四十五條 (過半數 議決原則) 總會의 議事는 出席者의 議決權의 過半數로서 이를 議決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의 決定에 依한다 但다 음各號의 事項은 總會에서 總組合員의 三分之二以上이 出席하여

出席者의 議決權의 三分之二以上의 多數로써 議決함을 要한다

- 一 定款의 變更
- 二 積立金의 使用
- 三 組合의 解散 또는 合併、分割
- 四 組合員의 除名
- 五 組合長、常務理事、理事 및 監事의 解任

第四十六條 (代理議決權) ① 組合員은 代理人으로
 此 議決權을 行使케 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 그 組合員은 出席
 한 것으로 看做한다

② 代理人은 組合員 또는 同居하는 家族임을 要하며 代理人
 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一人에 限한다

000322

③ 代理人은代理權을證明하는書面을組合에提出하여야 한다

第四十七條 (民法準用) 民法第六十二條、第六十四

條及第六十六條의規定은里村組合에이를準用한다

第四十八條 (決算報告) ① 組合長은定期總會開會日

부터一週日前에決算報告書(財産目錄、貸借對照表、

事業報告書、剩餘金處分案 또는損失額處理案)을監事

에게提出하고이를主事務所에備置하여야한다

② 組合員及組合의債權者는前項의揭記한書類의閱覽을

要求할수있다

第四十九條 (監事の意見書) 組合長은前條第一項에揭

記한書類及監事の意見書를定期總會에提出하여그承認

을 얻어야 한다

第五十條 (總會議決事項) ① 다음各號의事項은總會
의議決을 얻어야 한다

- 一、 定款의變更
- 二、 業務規定의制定變更또는廢止
- 三、 每事業年度의事業計劃또는그變更
- 四、 經費의賦課및徵收方法
- 五、 業務所要資金의起債
- 六、 組合長、理事및監事의選任
- 七、 財産目錄、貸借對照表、事業報告書、剩餘金處分
案、損失處理案및監事의報告書
- 八、 市郡組合에의加入또는脫退에關한事項

九、其他重要한事項

② 前項第七號에對한承認決議를얻었을때에는組合長은 二週日內에그書類를設立登錄한官署에提出하고또貸借 對照表를公告하여야한다

第五十一條 (總代會) ① 組合은定款으로써總會에對 할總代會를늘수있다

② 總會에關한規定은第四十四條의規定을除한外에는前 項의總代會에이를準用한다 但總代會에서는前條에規 定된各項은議決하지못한다

第五十二條 (任員) ① 組合에組合長、常務理事、理 事、監事를둔다

② 組合長、理事、監事는名譽職으로한다

③ 組合長、理事、監事는總會에서組合員中에서이를選
 任하고工定數는理事五人乃至九人監事는二人으로한다
 ④ 常務理事는組合員또는組合員의同居家族中에서總會
 에서選任한다

⑤ 組合設立當時의組合長、常務理事、理事와監事는創
 立總會에서選任하고그任期는다음의定期總會에서後任
 者가選任될때까지로한다

第五十三條 (任員의任期) 組合長、常務理事및理事의
 任期는二年으로하고監事의任期는一年으로한다 但在
 期中最終의決算期에關한定期總會前에그任期가完了할
 때에는定期總會가終結할때까지그任期는伸長된다

第五十四條 (任員의解任) ① 組合長、常務理事、理事

는 在任中이라도 언제든지總會에서第四十五條에 依한 決議로써 이를 解任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決議는 總組合員五分之一以上이 解任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提出할 때 組合은 總會五日前에 本人에게 그 書面을 送付하여 總會에서 辨明의 機會를 준 後에 附議하여야 한다

第五十五條 (組合長) ① 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여 그 業務를 統理하고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常務理事) ② 常務理事는 組合長을 輔佐하여 業務를 執行하며 組合長이 有故時에는 定款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 組合長 및 常務理事에 對한 意思表示는 組合에 對하여 그

効力を發生한다

(任員の當然解任과決議解任) ④組合의任員에對하여서
는第三百三十二條第一項乃至第三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五十六條 (民法準用) 民法第四十五條、第五十二

條第二項、第五十五條의規定은이를組合에準用한다

第五十七條 (事業競合排除) 組合의事業과實質的으

로競爭關係에이른事業을經營하거나이에從事하는者는

組合의任員또는會計職員이될수없다

任員또는會計職員이前項의事業에從事하게된때에는退

職하여야한다

第五十八條 (兼任禁止) 組合長、常務理事와理事는

그組合의監事또는職員을兼할수있다

監事는그組合의職員을兼할수있다

第五十九條 (監查) ①監事는組合의財産및業務執行狀

況을監查하여總會에報告하여야한다

②監事는組合의財産狀況또는業務執行에關하여不正한

事實을發見하였을때에는이를總會와主務部長官및市郡

組合長에게報告하여야한다

第六十條 (監事の代表) ①組合이組合長、常務理事

理事와契約을締結할때에는監事가組合을代表한다

②組合과組合長、常務理事、理事間의訴訟에對하여도

또한같다

第六十一條 (理事會) ①理事會는組合長、常務理事및

理事로써構成하여組合長이 이를召集한다

② 다음各號의事項은理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一 組合員의資格審査

二 業務의計劃및變更

三 起債와償還

四 豫算과決算

五 職員의任免

六 其他重要事項

③ 理事會는會員定數過半數의出席으로開議하고出席會

員의過半數로써이를議決하고議長은表決權을가지며可

否同數인 때에는議長의決定에依한다

第六十二條 (書類閱覽權) 組合員및組合의債權者는

定款 總會決議錄 및 組合員名簿의 閱覽을 要求할 수 있다
 第六十三條 (發信主義) 組合이 그 組合員에 對하여 行하는 通知 또는 催告는 組合員名簿에 記載한 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 또는 組合員이 組合에 通知한 連絡處로 하여 行한다

第六節 經理

第六十四條 (事業 및 會計年度) 組合의 事業年度 및 會計年度期間은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第六十五條 (剩餘金) ① 組合은 損失額을 補填한 後가 아니라 剩餘金을 處分하지 못한다

(配當制限) ② 剩餘金配當에 關한 制限은 主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第六十六條 (法定積立金) ① 組合은定款으로定한金額에達할때까지每事業年度의剩餘金の十分之一以上을積立金으로積立하여야한다(以下法定積立金이라稱한다)

(兼務準備金) ② 組合은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兼務準備金を積立할수있다

第六十七條 (積立金の使用禁止) 法定積立金은다음各號의境遇以外에는이를使用하지못한다

- 一 組合의損失額을補填할때
- 二 그組合의区域이他組合의区域으로된境遇에있어서
그財産の一部를他組合에讓與할때

第六十八條 (預金の取纏) 組合은第十四條第一項第

大號의 規定에 依하여 預金으로서 取置한 金은 加入한 市郡
組合에 個人別로 預金하여야 한다

第六十九條 (余裕資金) 業務上의 余裕資金은 業務資

金으로 所要될 때까지 加入할 市郡組合에 預入하거나 郵便
貯金 國債債券 地方債券 其他 主務部長官이 認定한
有價證券을 買入하는 處遇以外에는 이를 運用하지 못한다

第七十條 (出資의 減少決議) ① 組合이 出資一座金額
의 減少를 議決할 때에는 그 議決日부터 二週日以内に 財產
目錄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出資의 減少公告와 催告) ② 組合은 前項의 期日內에
그 債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이를 陳
述하라는 趣旨을 定款의 定한 方法에 依하여 公告하고 또 既

知의 債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但
그 期間은 二個月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第七十一條 (債權者의 異議) ① 債權者가 前條第二項
의 期間內에 出資의 減少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承認한 것으로 看做한다.

(異議에 對한 措置) ② 債權者가 異議를 陳述할 때에는
組合이 이를 辨濟하거나 또는 相當한 担保를 提供하지 아니하
면 그 出資를 減少한 決議는 效力을 發生치 못한다.

第七節 監督

第七十二條 (主務部長官의 檢査) ① 主務部長官은 組
合長 및 常務理事 또는 清算人에게 組合의 業務財產清算事

務其他 必要한事項에 關하여 報告를 시키며 그 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 中央會長 및 市郡組合長은 隨時 組合의 狀況을 檢査하며 必要한事項의 報告를 시킬 수 있다

第七十三條 (組合員의 檢査請求) 組合員이 總組合員의 十分之一 以上의 同意를 얻어 組合事務의 執行狀況이 定款 또는 法令에 違反된다는 理由로서 檢査를 請求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中央會長 또는 市郡組合長으로 하여금 當該 組合의 業務狀況을 檢査하게 하여야 한다

第七十四條 (決議取消、在員改選、業務停止命令) 主務部長官은 組合業務 또는 財産狀況에 依하여 그 業務의 繼續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될 때 法令、定款、命令에 違反

하여 그情況이重大할 때 또는 第十四條에規定한 以外의 業務를 行할 때에는 中央會長 및 市郡組合長의 意見을 들어 當該 會議의 決議를 取消하거나 그 任員의 改選을 命하고 그 業務를 停止케 할 수 있다

第七十五條 (解散命令) 主務部長官은 組合이 다음各 條의 一에 該當하게 될 때에는 中央會長의 意見을 들어 이를 解散시킬 수 있다

- 一 組合이 一年以上 그 業務를 實施하지 아니할 때
- 二 組合이 二回以上 前條에 依한 取消、改選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고 이를 是正하지 아니할 때

第八節 分割、合併、解散

第七十六條 (合併) ① 組合이 合併을 要할 때는 合併契
約을 作成하여 主務部에 申告하여야 한다

(分割) ② 組合이 分割을 要할 때에는 分割後 設立되는
組合이 繼承하여야 할 權利義務의 範圍를 定하여 主務部長
官의 定한 바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第七十七條 (合併 또는 分割로 因한 設立 節次) 第十
條의 規定은 合併 또는 分割로 因하여 設立되는 組合에 도 이
를 準用한다

第七十八條 (合併 또는 分割로 因한 設立 登記) 組合이
合併 또는 分割을 要할 때에는 定款의 制定 또는 定款의 變更
을 한 날 부터 主務所에서는 二週日內에 支務所에서는
三週日內에 各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 또는 分割後 存續

할組合은變更의登記를하고合併또는分割에因하여消滅된組合은解散登記를하고合併또는分割에因하여設立된組合은設立登記를하여야한다

第七十九條 (合併또는分割로因한權利義務繼承) 合併또는分割後存續할組合或은合併또는分割로因하여設立된組合은合併또는分割로因하여消滅된組合의權利義務를繼承한다

第八十條 (解散) ① 組合은다음各號의事由에因하여解散된다

- 一 定款에規定한解散事由의發生
- 二 總會의議決
- 三 合併또는分割

四 組合員의 數가 그 區域內에 있는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 數의 三分之一 未滿이 되었을 때

五 主務部長官의 解散命令

六 破 産

② 前項第一號 및 第二號의 境遇에는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그 解散事由가 發生한 날 부터 主務 務所에서는 二週日內에 支事務所에서는 三週日內에 各事 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第八十一條 (合併, 分割 또는 解散에 對한 公告, 催告)
第七十條의 規定은 組合의 合併, 分割 또는 解散의 境遇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八十二條 (法院의 破産宣告) 組合이 그 債務를 完濟
하기 不能하게 된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或은 債權者의 請求
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서 破産을 宣告한다

第八十三條 (解産剩餘財産) ① 解散한 組合이 債務를
完濟하고 剩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定款에 依하여 이를 處分
한다

(解産損失負擔) ② 解散한 組合이 그 財産으로서 債務
를 完濟하기 不能한 때에는 組合員은 第二十五條의 規定한
責任에 依하여 損失負擔을 拂込하여야 한다

第九節 清算

第八十四條 (清算人) ① 組合이 解散할 때에는 破産의

로 인한解散의境遇를除外하고는組合長이清算人이 된다
 但 總會에서他人을選定한 때에는例外로한다
 (清算監督) ㉓ 主務部長官은組合의清算事務를監督
 한다

第八十五條 (清算人の職權) 清算人は 그職務의範圍
 内에서組合長과同一한權利義務를 가진다

第八十六條 (清算財産處分) 清算人は 就在後遺滯留
 이組合財産의狀況을調査하고財産目錄 및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財産處分의方法을定하고總會에提出하여그承
 認을求하여야한다

第八十七條 (辨濟、扶託義務) 清算人は組合의債務
 를辨濟하거나 또는辨濟에必要한金額을扶託하지아니하

면組合의財産을分配하지못한다

第八十八條 (清算、決算報告) 清算事務가終了할때

에는清算入은滯留없이決算報告書를作成하고 이를總會
에提出하여그承認을求하여야한다

第八十九條 (民法準用) 民法第七十三條、第七十五

條乃至第八十三條의規定은組合의清算에이를準用한다

但 民法第七十五條中 “前條” 라한것은本法第八十四
條로본다

第十節 登記

第九十條 (登記簿) 登記所는農業協同組合登記簿를

備置한다

第九十一條 (設立登記申請添付書類) 設立에 관한登記申請에는 設立登錄證、創立總會決議錄 및 定款의 各騰本과 出資拂込證明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九十二條 (變更登記申請添付書類) 事務所의 移轉、組合長、常務理事、理事、監事의 選任、退任 出資額의 變更等의 登記申請에는 移轉或은 選任、退任其他變更을 證明할 수 있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九十三條 (出資減少登記申請添付書類) ① 出資一座의 金額減少의 登記申請書에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面外에 第七十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여 催告한 事實 및 辭若異議를 陳述한 債權者本狀을 때에는 이에 對한 辨濟를 하거나 또는 担保提供、供託等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水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合併 또는 分割 또는 解散의 登記申請에 이
를 準用한다

第九十四條 (解散登記申請添付書類) 組合의 解散登
記申請에는 解散의 事由를 記載하고 總會의 決議 또는 合併
或은 分割에 因하여 解散된 때에는 總會의 決議錄을 添附하
며 第八十二條에 依하여 解散할 때에는 當該法院의 破産宣
告書를 添附하여 水한다

第三章 市郡農業協同組合

第九十五條 (目的) 市郡組合 (以下 組合이라 한다) ...
은 里洞組合의 業務의 圓滑한 運營을 圖謀하며 健全한 發展

은 期 限을 目的으로 한다

第九十大條 (區域) 組合의 業務 區域은 市 郡의 區域에 依한다

第九十七條 (組合員) 組合은 業務 區域內에 住所를 가진 里洞 組合을 組合員으로 한다

第九十八條 (組合設立登錄) 組合을 設立하고 召開 때 에는 十五 組合 以上의 里洞 組合이 發起人이 되어 設立 準備 會를 組織하고 定款을 作成하여 創立 總會의 議決을 얻어 主 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但 創立 總會 當時의 組合員數는 同 業務 區域內에 設立된 里洞 組合 數의 過半數이어야 한다

第九十九條 (支所)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所를 둘 수 있다

支所를 設置하였을 때에는 十日以内에 主務部長官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百條 (有限責任) 組合員의 責任은 有限責任으로 한다

第百一條 (業務種類) 組合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
여 다음 各號의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한다

一 生産指導事業 (組合員의 生産綜合計劃의 樹立과 指導業務)

二 信用事業 (組合員의 預金受入 및 農業資金貸付業務)

三 購買事業 (組合員의 必要한 物資의 共同購入、加工、
生産과 이를 斡旋하는 業務)

- 四 販賣事業(組合員의生産品의加工、運搬、保管、檢査、販賣의이행斡旋하는業務)
- 五 利用事業(組合員의利用事業에必要한機具、車輛、倉庫及其他施設等을備置하여利用케하는業務)
- 六 共濟事業(農作、家畜、其他災害에對한相互保險共濟業務)
- 七 農村工業施設(農村工業의發展을爲한工場施設)
- 八 文化事業(生活改善、文化向上과醫療에關한施設)
- 九 団体協約의締結(他經濟団体、文化団体外經濟行爲 또는生活改善施策의協約)
- 一〇 畜産組合、園芸組合 및 特殊組合과의共同事業 또는
 二의代理業務

二 前各號의 附帶業務

三 政府의 委囑하는 事業

三 組合員의 業務에 關한 指導, 監督, 監查, 調整

四 其他目的 達成에 必要한 業務로서 主務部長官의 認可

를 반은 着

第百二條 (農銀出資) 組合은 前條의 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韓國 農業銀行에 組合能力에 相應한 出資를 하여야

한다

第百三條 (組合長, 監事) 〇 組合長 및 監查는 總會

서 里洞 組合의 組合員中에서 選任한다

(理事) ② 理事는 總會에서 組合員의 理事中에서 選任

한다

(常務理事) ③ 常務理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具備한 者 中에서 總會의 承認을 얻어 組合長이 任命한다

第百四條 (組合員間의 代理 不認定) 組合員은 그 權利

行使에 關하여 다른 組合員을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없다

第百五條 (信用事業規定) 組合이 行하는 第百一條第

一項 第三條에 依한 借用事業에 關한 規定은 때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百六條 (農銀의 事務檢査) 組合은 韓國 農業銀行法

의 規定한 바에 依하여 與信管理를 爲한 事務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百七條 (準用規定) 第二章里洞 農業協同組合에 關

한 規定 및 第百三十二條 第一項乃至 第三項의 規定은 本章

各條文에 抵觸되는 것을 除外하고는 市郡農業協同組合에 이것을 準用한다

第四章 園藝協同組合 및 畜産協同組合

第百八條 (目的) 園藝協同組合 및 畜産協同組合 (以下 園藝組合, 畜産組合 이라 한다) 은 園藝 및 畜産을 經營하는 者로 하여금 그 高度한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百九條 (區域) 園藝組合 및 畜産組合의 業務區域은 市郡區의 區域에 依한다 但 必要에 依하여 隣接市郡區를 區域으로 할 수 있다

第百十條 (組合員) 園藝組合 및 畜産組合은 業務區域

내에在所·居住 또는 事業場을 가지고 園芸 또는 畜産을經營하는者를組合員으로한다

第百十一條 (設立登錄) 園芸組合 또는 畜産組合을設立하고자할 때에는 同業務区域内에서 組合員이 될者五

人以上이 發起人이 되어 發起會를組織하고 定款을 作成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어 主務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但 創立總會當時에 組合員數는 同業務区域内의 組合員이 될者의 過半數이어야 한다

第百十二條 (保證責任) 園芸組合員 및 畜産組合員의 責任은 保證責任으로한다

④ 保證責任限度額은 定款으로서 定하고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③ 組合員名簿에는 個人別保證責任限度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百十三條 (業務種類) 園芸組合 및 畜産組合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한다

一 生産指導事業 (組合員의 生産計劃의 樹立과 指導業務)

二 購買事業 (組合員의 必要한 生産資材의 共同購入, 加工, 生産과 이를 斡旋하는 業務)

三 販賣事業 (組合員의 生産品의 加工, 運搬, 保管, 檢査, 販賣와 이를 斡旋하는 業務)

四 利用事業 (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 車輛)

倉庫及其他施設等を備置하여利用케 하는 業務)

五 信用事業 (組合員에 對한 園芸 또는 畜産關係 資金貸
付 業務)

六 共濟事業 (園芸, 家畜 其他 災害에 對한 相互 保險 共
濟 業務)

七 其他 目的 達成에 必要한 業務로서 主務 部長官의 認可
를 받은 業務

第百十四條 (總代會의 設置) 園芸 組合 및 畜産 組合은

總會에 代할 總代會를 두고 이 總代會에서 組合長, 理事 및
監事를 選任한다

總代會에 關한 規定은 定款으로 決定한다

第百十五條 (準用 規定) 第三章 里洞 農業 協同 組合에

國庫規定 및 第九十九條、第一百二條、第一百三條第三項、第一百六條、第一百三十二條第一項乃至第三項의 規定은 本章各條文에 抵觸되는 것을 除外하고는 園芸組合 및 畜産組合에 이를 準用한다

第五章 特殊農業協同組合

第一百六條 (目的) 特殊組合은 特殊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者로 하여금 그 高度의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一百七條 (區域) 特殊組合의 業務區域은 定款으로 定한다

第一百八條 (組合員) ① 特殊組合은 特殊農業을 主業

으로 하는 것을 조합員으로 한다

(設立認可) ㉔ 特殊組合을設立하고저할 때에는組合員二十人以上이發起人이 되어發起人會를組織하고定款을作成하여創立總會의議決을 얻어主務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百十九條 (業務種類) 特殊組合은 그目的을達成하기

기爲하여 다음各號의業務의全部또는一部를行한다

一 生産指導事業 (組合員의生産計劃의樹立과指導業務)

二 購買事業 (組合員의必要한生産資材의共同購入、加工、生産과이를斡旋하는業務)

三 販賣事業 (組合員의生産品의加工、運搬、保管、

檢査、販賣외 이를 幹放하는 業務)

四 利用事業(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車輛、倉庫 및 其他 施設等을 備置하여 利用케 하는 業務)

五 信用事業(組合員에 對한 特殊 農業 資金貸付 業務)

六 共濟事業(災害에 對한 相互 保險 共濟 業務)

七 其他 目的의 達成에 必要한 業務로서 主務 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業務

第百二十條 (準用 規定) 第二章 里洞 農業 協同 組合에

關한 規定 및 第九十九條、第百二條、第百三條 第三項、

第百六條、第百十二條、第百三十二條 第一項乃至 第三

項의 規定은 本章 各條 文에 抵觸되는 것을 除外하고는 特殊

組合에 이를 準用한다

第六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第二百一十一條 (目的)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系統

各機關 (里洞組合、市郡組合、園芸組合、畜産組合、

特殊組合)의 業務上의 指導와 共同利益의 增進을 圖謀하

며 또 그의 監督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百一十二條 (區域) ①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그 業務區域은 全國으로 한다

(支部) ② 中央會는 特別市 및 道에 支部를 設置할 수 있

다

第二百一十三條 (會員) ① 中央會는 市郡組合 및 園芸組

合、畜産組合、特殊組合을 會員으로 하여 構成한다

(設立認可) ③ 中央會를設置코지할 때에는創立當時
에設立된組合數의過半數의市郡組合(園芸組合及畜産
組合、特殊組合을 포함한다)이發起人이되어定款을作
成하여創立總會의議決을얻어主務部長官의認可를받어
야한다

第百二十四條 (定款) 中央會의定款에는다음의事項
을記載하여야한다

- 一 名稱
- 二 事務所
- 三 會員의加入 및脫退에關한規定
- 四 會員의權利義務에關한規定
- 五 總會、中央委員會에關한規定

- 六 資産과 監査에 關한 規定
- 七 任員과 理事會에 關한 規定
- 八 業務執行에 關한 規定
- 九 定款의 變更에 關한 規定
- 十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事由를 定할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第百二十五條

(設立登記)

中央會의 設立認可가 있을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
여야 한다

- 一 目的 및 事業의 種類
- 二 前條第一項 第二號 및 第九號에 揭記한 事項
- 三 出資의 總額

四 設立認可의 年月日

五 會長、副會長、理事及監事의 姓名、住所

第百二十條 (有限責任) 中央會員의 責任을 有限責任으로 한다

第百二十七條 (業務種類) 中央會는 다음各號의 業務

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한다

一 會員의 業務에 關한 指導、監督、監査、調整

二 會員의 業務에 關한 調査、研究、普及、宣傳、

講演

三 會員의 指導者 및 職員의 養成、訓練、講習

四 會員의 業務助成에 關한 共同施設

五 會員을 爲한 損害、相互保險、其他 共濟施設

六 會員의 必要한 物資를 共同으로 購入하여 加工 或은 加工하여 나하고 또는 生産하여 供給하며 或은 購入을 斡旋하는 業務

七 會員의 所有物 또는 委託物을 運搬、加工、保管、檢査、販賣 調整하고 或은 販賣를 斡旋하는 業務

八 農業 協同 組合 系統 向의 共同 事業 또는 工의 代理 業務

九 會員에 對한 補助金의 交付

一〇 會員이 必要로 하는 事業資金의 綜合的 計劃 樹立과 이를 調達하기 爲한 韓國 農業 銀行과 의 連絡 交渉

一一 主務部長官이 委囑하는 事業(生産、購買、販賣 및 配給 事務等 政府 代 行 事業)

一二 前各號의 附帶 事業

三 其他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業務로서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業務

第百二十八條 (機關) ① 中央會의 總會, 中央委員會 및 理事會를 둔다

② 總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및 會員으로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法令, 定款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中央會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③ 中央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및 中央委員으로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法令, 定款과 總會의 委任事項 및 其他 重要條件을 審議決定한다

第百二十九條 (中央委員의 定數) ① 中央委員은 다음 各條의 定數에 依하여 選任된 代表者로서 充當한다

- 一 會員인市郡組合이各道別로選出한三人式의代表者
但 서울特別市및京州道는一人으로하되會員인市郡
組合이一道十五箇組合까지는三人、十五箇組合을超
過하는境遇에는每十箇組合마다一人式을增選한다
- 二 會員인畜産組合이特別市및各道別로選出한一人式
의代表者 但、會員인畜産組合이一道十五箇組合外
지는一人、十五箇組合을超過하는境遇에는每十箇組
合마다一人式을增選한다
- 三 會員인園芸組合이特別市및各道別로選出한一人式
의代表者
- 四 會員인特殊組合이業種別로全國을通하여選出한各
一人式의代表者

② 中央委員選舉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中央委員會는 委員定數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의 決定에 依한다

④ 總會 또는 中央委員會에 있어서 是會員 또는 中央委員은 다른 會長 또는 中央委員을 代理入으로 選任할 수 없다

第百三十條 (在員) ① 中央會의 會長、副會長、中央委員、理事 및 監查를 둔다

② 會長 및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여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理事는 中央委員會에서 選出한다

④ 理事는 그定敎를十五人以內로한다

⑤ 各道支部長은理事로한다

⑥ 理事會는會長、副會長及理事로서構成하여會長이이를召集하고法令、定款과總會及中央委員會의議決에依據하여業務執行에關한事項을決議한다

⑦ 監查는總會에서選出하고그定敎는三人으로하되그中一人은常任으로한다

⑧ 中央會에顧問若干名을들수있다

⑨ 顧問은理事會의決議를얻어會長이이를委囑한다

⑩ 中央會設立當時의會長、副會長과監查는創立總會에서選任하고그任期는定敎의定하는바에依한다

第三百三十一條 (任員의任期) ① 會長、副會長、中央

委員、理事의任期는三年、監査의任期는二年으로한다

〔會長〕② 會長은中央會를代表하며그業務를統理하

고總會中央委員會및理事會의議長이된다

〔副會長〕③ 副會長은會長을補佐하여會長有故時에

는그職務를代理하고會長缺員인때에는그職務를代行하

다

〔理事〕④ 理事는會長、副會長을補助하며定款에定

하는바에依하여業務를執行하고會長、副會長有故時에

는會長이指定한順次로그職務를代理한다

第三百三十二條 〔任員의當然退職事項〕① 會長、副會

長、理事의監事는다음各號의一에該當할때에는當然히

退職한다

一 禁治産、準禁治産宣告를 받았을 때

二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

三 罰金以上の刑의 言渡를 받고 그刑이 確定되었을 때

〔任員의 議決退職事項〕 ② 會長、副會長과 監事가 다
음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解
任된다

一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違
反하는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

二 心身의 障害로 因하여 職務의 執行이 困難하게 되었을
때

③ 理事가 前項各號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中央委員會의 決
議에 依하여 解任된다

第三百三十三條 (借入金) 中央會는 第三百二十七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 所 要 資金에 限하여 主務 部長官의 認可를 受하여 借入 할 수 있다

第三百三十四條 (準用規定) 第二章 里洞 農業 協同 組合의 規定은 本章 各條 文에 抵觸되는 것을 除外하고는 中央會에 이를 準用한다

八、清算의境遇에 第八十六條 및 第八十七條 또는 民法第七十九條 및 第八十三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또는 債權申告期間滿了前에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를 한 때

九、監督機關의 監査 및 檢査를 拒否妨害 或은 忌避하거나 또는 當該 檢査員의 審問에 對하여 答辯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陳述을 할 때

第百三十七條(潛稱團體의 罰則) 第五條第二項에 違反하여 그 名稱을 使用하는 者에 對하여 主務部長官은 그 解散을 命하며 主務者에 對하여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 則

第百三十八條(施行期日) 本法은 檀紀四二九〇年三月一

日부시施行한다

第百三十九條(從前團體法令의廢止) 朝鮮農會令、金融組合令 및 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殖産契令、朝鮮産業組合令은 이를廢止한다

第百四十條(從前團體의引受와清算) ① 殖産契令에依한 殖産契는 里洞組合이、金融組合令에依한 金融組合은 市郡組合이、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에依한 大韓金融組合聯合會는 中央會가、朝鮮農會令에依한 大韓農會의 特別市 및 道農會는 中央會가、市郡農會中一般關係는 市郡組合이、畜産과 園藝關係는 當該市郡의 畜産組合과 園藝組合이、産業組合令에依한 産業組合은 工業種에 該當하는 各特殊組合이、朝鮮重要物産同業組合令에依한 同業

第七章 罰則

第三百三十五條 (背任罰則)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이 組合 또는 中央會의 事業目的以外에 資金을 貸付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 또는 中央會의 財産을 處分 또는 利用하거나 또는 本法과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를 함으로써 組合 또는 中央會에 損失을 가져 오게 하였을 때에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三百三十六條 (其他罰則) 組合의 組合長、常務理事、理事、監事 및 清算人과 中央會의 會長、副會長、理事、監事 및 清算人 이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 監督機關의認可를받어야할境遇에認可를받지아니한 때

二 登記함을怠慢하거나 또는不正의登記를한 때

三 監督機關 總會 理事會 中央委員會 總代會에對

하여虛偽의陳述을하거나 또는事實을隱蔽한 때

四 第四十八條第一項 또는 第四十九條 第五十條의規定

에違反한 때

五 第六十五條乃至第七十條 第七十一條第二項의規定

에違反한 때

六 第八十八條에規定하는報告를아니하고 또는書類를提

出치아니할 때

七 公告함을怠慢하거나 또는不正한公告를한 때

組合으로서本法에依한畜産、園藝、特殊組合에該當하는組合은各其該畜畜産組合、園藝組合、特殊組合이그業務外財産一切을引受하여清算한다

② 特別市 또는 市에所在하는金融組合 또는 其他組合으로서前項에依하여引受清算할組合이 없거나 또는 그清算方法이明確하지 아니한組合의引受清算에關하여서는大統領令의定하는바에依한다

③ 前各項의清算에依한利得에對하여는税金을賦課하지 못한다

④ 主務部長官은그가許可 또는 認可한團體로서農業協同組合業務外競合되는業務를營爲할 때는 이를解散指令하거나該當業務의全部 또는 一部를停止시킬수있다

第四百十一條（施行令）本法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
令으로 써 定한다

000338

農業協同組合法案主要骨子概要

組合種類	市郡	農業協同	組合	里洞	農業協同	組合	組合種類
區域	市郡	里洞	里洞	里洞	里洞	里洞	區域
構成員	市郡內十五組以上	의里洞以上	農民	地域二十人以上	의里洞以上의	農民	構成員
發起人	市郡內十五組以上	의里洞以上	農民	二十人以上	의里洞以上의	農民	發起人
設立要件	市郡內十五組以上	의里洞以上	農民	二十人以上	의里洞以上의	農民	設立要件
機關名	總會	의里洞以上	總會	總會	의里洞以上	總會	機關名
構成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構成員
會長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會長
副會長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副會長
常務理事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常務理事
理事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理事
監事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組合員	의里洞以上	組合員	監事
主要業務	一般業	의里洞以上	一般業	一般業	의里洞以上	一般業	主要業務
責任限度	無限	의里洞以上	無限	無限	의里洞以上	無限	責任限度

七七

組合	協同	農業	特殊	組合	協同	畜産	園藝
	以		制		市		
	各		限		郡		
	農業者		特殊		의組合		地域内
	農業者可	以上의	特殊		組合員	以上の	五十人
		部長	二十人		川登錄		主務部
		官認	主務		理事會		總會
	理事會		總會		構		
	構	常務理事	組合員		成	常務理事	組合員
	成	總會	組合員		選	總會	組合員
	選	具備者中	大統領令으로		任	是定된資格	大統領令으로
	任	中에서	是定된資格을		長이任命	을具備한者	是定된資格
	長이任命	中에서	組合員		選	總代會	組合員
	選	中에서	組合員		任	命	組合員
	任	全	組合員				
		上	組合員				
		信託業務	一般業務				
	(限業務)		保證				
	責任		保證				

000330

會 央 中													
全 國													
合 組	同 組 (園藝)	業 協 組 合	珠 農 協 同	以 特 農 業	組 合 市 郡	協 同 教 育	畜 產 過 半	組 合 數 的	協 同 組 合	園 藝 立 法	組 合 現 在	農 業 實 時	市 郡 創 立
				認 可 委 員 會				主 務 部 總 會					
以 業 種	珠 組 合	若 以 特	選 出 的	一 人 式	道 別 互	合 以 各	國 藝 組	若 畜 產	選 出 的	三 人 式	道 別 互	合 以 各	市 郡 組 員
		을 年 會	의 承 認	部 長 官	여 主 務	選 出 的	會 以 付	會 以 付	共 司 總	副 會 長	會 長		
				選 出 選 任				會 以 付 會 以 付			中 央 委 員 總 會 指 導 業		
				務 一 般 業				務 有 限					
				責 任				有 限					

七九

農業協同組合法에準用된民法및非訟事件手續法條文

一 民法

第四十四條 法人은理事其他代理人이其職務를行使하는 데있어他人에게加한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法人의目的의範圍内に있지않는行爲에依하여他人에損害를加하였을때에는其事項의議決을贊성한社員理事및此를履行한理由其他代理人連帶하여其賠償의責任이있다
음

第四十五條 法人은그設立의日로부터主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二週間其他의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三週間内に登記함을要한다

法人의 設立은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를 하지 아니하
면 이로써 他人에 對抗하지 못한다

法人 設立後 새로 事務所를 設立할 때에는 其 事務所의 所在
地에서 三週間內에 登記함을 要함

第四十七條 第四十五條第一項及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
記할 事項으로서 官廳의 許可를 要하는 것은 其 許可書의 到
着時부터 登記의 期限을 起算함

第四十八條 法人이 事務所를 移轉한 때는 舊所在地에서
는 二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
에 第四十六條第一項에 定한 登記를 하고 其他 事務所를 移
轉할 때는 舊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
所在地에서는 四週間內에 第四十六條第一項에 定한 登記

를함을要함

第五十二條第二項 理事數人있을때에定款又는寄附行爲
에別段의規定이없을때에는法人의事務는理事의過半數
로서決定함

第五十三條 理事는法人의事務에對해서法人을代表함

但 定款의規定又는寄附行爲의趣旨에違反할수없음

또社團法人에있어서는總會의決議에조침을要함

第五十四條 理事의代理權에加한制限은此를가치고善意

의第三者에對抗할수없음

第五十五條 理事는定款寄附行爲또는總會의決議에依하

여禁止되지않은境遇에限하여特定의行爲의代理를他人

에委任할수있음

第六十二條 總會의召集은적어도五日前에그會議의目的
인事項을提示하여定款에定한方法에따라이를하여야한
다

第六十四條 總會에있어서는第六十二條規定에依하여豫
히通知한事項에對하여서만決議를할수있음 但 定款
에別段의規定이있을때에는其限에있지않음

第六十六條 社團法人과어느社員과의關係에對해서議決
을할때에는其社員表決權을가지지못함

第七十三條 解散한法人은清算의目的의範圍內에서는그
清算이結了時까지存續한것으로看做함

第七十五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清算人된者없을때에는
清算人이缺員됨으로因하여損害를生할虞慮가있을때는

裁判所는利害關係人或은檢察官의請求에因하여또는職權으로州清算人을選任함을得함

第七十六條 重要な事由있을때에는裁判所는利害關係人或은檢事の請求에因하여또는職權으로清算人을解任시킬수있음

第七十七條 清算人은破産의境遇를除한外解散後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其他의事務所에서는三週間內에其姓名居住및解散의原因 生年月日의登記를하고 또如何한境遇에도이를主務官廳에届出함을要함
清算中就職한清算人은就職後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其他事務所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그姓名住所를登記하고또이를主務官廳에届出함을要함

第七十八條 清算人の職務는如左함

一 現務의 結了

二 債權의 取立及 債務의 辨濟

三 殘餘財産의 引渡

清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事함에 必要한 一切의 行爲를 할 수 있음

第七十九條 清算人은 其就職日부터 二個月內 於어도 三回의 公告로 債權者에 對하여 一定의 期限內에 其請求의 申立을 催告함을 要함

但 其期間은 二個月을 지나지 못함

前項의 公告에는 債權者가 期限內에 申立하지 않을 때에는 其債權은 清算에서 除外되는 趣旨을 附記할 事

但 清算人은 아는債權者를 除外하지 못함

清算人은 아는債權者에 是 各別의 其申立을 催告함을 要함

第八十條 前條의 期間後에 申請한 債權者는 法人의 債務完

済의 後 歸屬權利者에 未引渡財産에 對하여서 만 請求할 수

있음

第八十一條 清算中에 法人의 財産이 그 債務를 完済함에 不

足한 것이 分明할 때에는 清算人은 即時 破産宣告를 請求하

고 此旨를 公告함을 要함

清算人은 破産管財人에 其事務를 引渡하였을 때에는 其任

을 終了할 것으로 함

本條의 境遇에 既히 債權者에 支拂하고 또 歸屬權利者에 引

渡한 것이 있을 때에는 破産管財人은 此를 返度할 수 있음

第八十二條 法人의 解散及清算은 裁判所의 監督에 屬함

裁判所는 何時든지 職權으로서 前項의 監督에 必要한 檢査를 할 수 있음

第八十三條 清算이 終了할 때에는 清算人은 이를 主務官廳에 届出함을 要함

第九十條 公의 秩序 또는 善良의 風俗에 違反하는 事項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効로 함

二 非訟事件手續法

第四百十二條 登記所는 何人에게든지 登記簿의 閱覽을 許하고 또는 手數料를 納付할 때에는 此에 其 謄本 또는 抄本을 交付할 事

登記所는 登記上利害의 關係를 疏明하고 申請한 者에 는

其關係 있는 部分에 限해서 登記簿의 附屬書의 閱覽을 許할 事

郵便料을 納付하고 登記簿의 謄本 또는 抄本을 請求할 時는 登記所此를 送付할 事

第四百十三條 登記所는 申請에 依하여 登記事項에 變更되 는 時 또는 어떤 事項의 登記 取消을 證明할 事

第四百十四條 登記한 事項의 公告는 官報及新聞紙上 最少 限一回 此를 行함을 要함

公告는 此를 掲載한 最終의 官報及新聞紙 發行의 日字의 翌 日 此를 行한 것으로 看做함

第五十條의 二 官廳의 許可를 要하는 事項의 登記를 申請 할 時 申請書에 官廳의 許可書 또는 그 認証 또는 謄本을 添

附 錄 要 旨

第百五十一條의六 登記所는 登記後 其 登記의 錯誤 또는 遺漏 있음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登記한 者에 對하여 此 旨을 通知할 事

但 其 錯誤 또는 遺漏가 登記所의 過誤에서 出하였을 때에는 그 限에 在지 않 다

前項 但書의 境遇에 是 登記所는 遲滯없이 地方 裁判所 長의 許可를 얻어 登記 更正을 要함

第百七十六條 清算人의 選任의 登記 申請書는 其 選任 並 商法 第百二十三條 第一項 第二號 及 第三號에 揭載한 事項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付함을 要함

第百七十八條 清算의 終了의 登記를 申請할 려면 申請書에

清算人其計算의承認을 얻은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함
을 要함

第二百六條 過料事件은 他의 法令에 別段의 規定이 是境遇
를 除한 外 過料에 處할 者의 住所地의 地方裁判所의 管轄로
함

第二百七條 過料의 裁判은 理由를 附한 決定으로 함
裁判所는 裁判을 하기 前에 當事者의 陳述을 들어 檢事의 意
見을 求할 事

當事者及 檢事는 過料의 裁判에 對하여 即時 抗告를 할 수 있
음

抗告는 執行停止의 效力을 有함
手續의 費用은 過料에 處하는 言渡였는 境遇에 其言渡를 받

은 者의 負擔으로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國庫의 負擔으로 함
抗告裁判所가 當事者의 申立에 相當한 裁判을 할 境遇에는 抗
告手續費用及前番에 있어서 當事의 負擔에 故하는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함

第二百八條 過料의 裁判은 檢事의 命令으로 執行하고 此命
令은 執行力이 있는 債務名義와 同一이 効力을 가짐

過料裁判의 執行은 民事訴訟法第六編의 規定에 依하여 此
를 行함

但 執行을 하기 前 裁判의 送達을 要함